

선	기관의 장
람	



제 556 호

2004년 1월 24일 토요일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4-5호(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) 3

공 고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-45호(공시송달(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차량개선명령)) 4

회								
람								

고 시

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04-5호

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4. 1. 19

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
1. 사 업 명 : 만수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2. 사업주체의 성명, 주소

○ 성명 : 만수동지역주택조합 (대표자 : 이용길)

대성산업주식회사 (대표자 : 김영대)

○ 주소 :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8

서울 종로구 관훈동 155-2

3. 사업 시행지의 위치·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

○ 위 치 : 인천 남동구 만수동 844-1외 110필지

○ 연 면 적 : 51,712.058㎡

○ 사업규모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
8~23층, 9동, 367세대

4. 사업시행기간(예정) : 2004. 5 ~ 2006.12.

5. 의제처리

공 고

인천광역시 남동구 제2004 - 45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성 명 : 박경진외 3명

공시기간 : 2004. 1. 21 ~ 2. 3(14일간)

제 목 :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차량 개선명령

1. 아래 소유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(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)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이행촉구를 하였으나,

2. 우편물(수취인불명, 수취인 미거주, 이사, 장기간 방치)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인천광역시 남동구 환경위생과(☎032-453-2444)로 오시어 공문을 수령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만일 공시기간 일까지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8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.

송 달 내 역

순 번	적발일자 및 장소	차량번호	소유자	주소지(차적지)	위반사항		조치 내역	비고
					기준치	측정치		
1	2003.12.8 인천시청후문앞	경기51더 7517	박경진	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26통 2반 근영파크맨션 다동 B02호 66블럭 9-2 롯트	매연2도 이하	매연3도	개선 명령	비디오 단속
2	2003.12.8 인천시청후문앞	인천80라 9224	추미자	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3번지 31통 1반 주공아파트 1107동 401호	매연2도 이하	매연3도	개선 명령	비디오 단속
3	2003.12.8 인천시청후문앞	인천31너 7472	이금출	인천 남구 주안동 22번지 16호 19통 3반	매연2도 이하	매연3도	개선 명령	비디오 단속
4	2003.12.6 인천만월산 터널 입구	인천80너 6099	김대 한	인천 남동구 간석동 913번지 9호 42통 3반 한창주택 B101호	매연2도 이하	매연3도	개선 명령	비디오 단속

끝.

2004. 1. 20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